

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
(12) 공개특허공보(A)

(51) Int. Cl. ⁴ C08L 23/10	(11) 공개번호 특 1989-0016107
	(43) 공개일자 1989년 11월 28일
(21) 출원번호	특 1989-0004607
(22) 출원일자	1989년 04월 07일
(30) 우선권주장	8808890.1 1988년 04월 15일 영국(GB)
(71) 출원인	더블유.아르.그레이스앤드컴파니-콘 로날드 에이.블리커 미합중국 10036 뉴욕뉴욕 애비뉴 오브디 아메리카스 1114
(72) 발명자	존 리차드 나이트
(74) 대리인	영국 캠브리지 시비3 8티디 바힐 리틀미도우 67 정우훈, 박태경

심사청구 : 없음

(54) 콘테이너용 폐쇄마개와 그마개의 카스켓형성 조성물

요약

내용 없음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콘테이너용 폐쇄마개와 그마개의 카스켓형성 조성물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

카스켓을 폴리프로필렌제마개에서 형성하기 위하여 그마개내에서 성형하는 데 적당한 열가소성 폴리머 조성물에 있어서, 가스켓이형재(gasket-releasing material)가 없도록 구성하며, 용융점 160℃ 이하이고 그 열가소성 폴리머조성물을 60wt% 이하인 양으로 구성시켜, 200℃ 이하의 온도로 상기 마개에서 성형한 가스켓이 그마개에 직접 접촉되도록 구성하는 접촉을 촉진시키는 프로필렌폴리머를 포함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2

제 1 항에 있어서, 상기 프로필렌폴리머는 프로필렌 호모폴리머 또는 40%까지의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코폴리머임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3

제 1 항에 있어서, 상기 프로필렌 폴리머는 2-10%의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코폴리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4

제 1 항 내지 3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, 상기 프로필렌폴리머는 산변성 프로필렌폴리머(acid modified propylene polymer)임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5

제 1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, 상기 프로필렌폴리머는 융점이 125-155℃의 범위임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6

제 1 항 내지 제 5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, 상기 조성 물에서 상기 프로필렌폴리머의 량은 10-30wt%의 범위 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7

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, 상기 프로필렌폴리머와, 폴리에틸렌, 에틸렌비닐아세테이

트 및 그 혼합물에서 선택된 다른 열가소성 폴리머의 혼합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8

제 7 항에 있어서, 상기 폴리에틸렌은 선형 저 밀도폴리에틸렌과 대단히 낮은 저 밀도폴리에틸렌에서 선택되며, 상기 에틸렌비 날아세테이트 용융지수 3-15를 가지며, 비날아세테이트 8-35%를 포함하는 코폴리머에서 선택함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조성물.

청구항 9

마개내에서 열가소성폴리머조성물로 200℃ 이하의 온도로 성형한 가스켓을 가진 폴리프로필렌제마개에 있어서, 상기 가스켓은 폴리프로필렌제마개의 직접 접촉하며, 가스켓이형재가 없으며 용점이 160℃ 이하이고 열가소성폴리머조성물이 60wt% 이하인량으로 존재하는 접착을 촉진시키는 프로필렌폴리머를 포함하는 열가소성 폴리머조성물에서 형성됨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폴리프로필렌제마개.

청구항 10

제 9 항에 있어서, 상기 가스켓은 상기 제1항 내지 제8항중 어느 한항에 의한 조성물에 형성됨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마개.

청구항 11

열가소성 폴리머조성물을 폴리프로필렌제마개에서 용융압출시켜 그조성물로 그마개에서 성형하여 열가소성폴리머조성물로된 가스켓을 성형하는 방법이 있어서, 상기 성형은 200℃ 이하의 온도에서 실시하며, 상기 가스켓은 폴리프로필렌제 마개에 직접 부착하며 가스켓이형재가 실제로 없으며, 용융점이 160℃ 이하이고 열가소성폴리머조성물이 60wt% 이하인량으로 존재하는 접착촉진 프로필렌폴리머를 포함한 열가소성폴리머 조성물부터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.

청구항 12

제 1 항에 있어서, 상기 성형은 140-190℃의 온도범위에서 실시함을 특징으로하는 상기 방법.

청구항 13

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, 상기 열가소성폴리머조성물은 청구범위 제 1 항 내지 제 8 항중 어느 한항에 의한 조성물임을 특징으로하는 상기방법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